



##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

제정일	2008. 2.28
개정일	2021. 4.15
개정차수	8차
담당부서	교수학습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삭제 2014.11. 1)

제 3조 (설치목적) 센터는 인재양성과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-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연구·개발하고 교수자의 효과적인 수업과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 (사업)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교수 학습방법 관련 연구개발
2. 교수법·학습법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운영
3. 수업운영, 수업설계 관련 촬영 및 컨설팅 지원
4. 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
5. 퓨터링, 스터디그룹 프로그램 운영
6. 기초학습능력, 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(개정 2016. 9. 1)
7. 전공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
8. (삭제 2021. 4.15)
9. 기타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6. 5. 1]

제 5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책임교수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연구원은 직원이 겸직 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책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임명하고,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의 운영을 전담한다.

④ (삭제 2021. 4.15)

제 6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09. 3. 1)

②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(개정 2009. 2.13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(개정 2009. 3. 1)

1.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(개정 2014. 3. 1, 2014.11. 1)
2. 센터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 (개정 2014. 3. 1)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

제 7조 (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3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